

Question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2005년 04월 12일)」의 주요내용은?

Answer

취 지 공동주택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기준은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현행의 50데시벨 이하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중량충격음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적용시기 및 대상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상 공동주택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중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58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구조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 참고

- 1)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짚은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써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다.
- 2)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써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